

# 『2026년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혜택 안내문

## ◆ 보험계약현황

- 피보험자 :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 보험기간 : 2026년 2월1일 (00:00) ~ 2026년 1월31일 (24:00) (1년)
  - 보험료 : 성남시에서 일괄납부완료
  - 가입절차 : 성남시 시민 전체 자동가입완료
- ※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 ◆ 보험계약담보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강력범죄피해보상금	성남시민이 강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만원
사회재난사망 (감염병 제외)	성남시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 열사병포함)	성남시민이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자연재해 후유장해 (일사병, 열사병포함)	성남시민이 자연재해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폭발,화재,붕괴,상해사망	성남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성남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전세버스포함)	성남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전세버스포함)	성남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한도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강도 상해사망	성남시민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강도 상해후유장해	성남시민이(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의료사고 법률지원	성남시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함/ 변호사 착수금의 80%)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남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14급/등급별 지급기준 적용)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상해진단위로금 (교통상해 제외)	성남시민이 보험기간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4주이상 진단시 10만원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 재난비용지원	성남시민이 성남시 내 위치한 주택에 발생한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재난지원비용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손해를 보상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사고당 100만원 한도

## ◆ 보장내용

### ○ 강력범죄피해보상금

- ▶ 대한민국내에서 보험기간중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1. 형법 제24장에서 정한 살인의 죄
  2. 형법 제25장에서 정한 상해와 폭행의 죄
  3. 형법 제32장에서 정한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죄
  4. 형법 제38장에서 정한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죄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폭력 등의 죄
    - 위 항의 살인, 상해와 폭행 및 폭력등으로 신체에 피해가 발생 한 경우에는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를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때에 만 보상
    -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이라 함은 피해자 신고나 제3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경찰관이 접수 하여 수사를 진행한 후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즉 기소된 경우 (약식기소의 경우를 포함하며 기소유예는 포함하지 않음)를 말함

- 보험금의 지급사유는 강력범죄로 인하여 검사에 의해 소년보호 송치 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

### ○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 단, 사회재난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은 제외함
- ※ 사회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 화생방 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 사회재난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 자연재해 사망 / 후유장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 ▶ 국내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망/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 자연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 제1호 가목)의 정의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성, 한파,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 ※ 열사병 및 일사병 :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T67.0 (열사병 및 일사병)에 해당하는 경우
- ▶ 자연재해라 함은 “자연재난”과 “열사병 및 일사병”을 말함
- ※ 자연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 ※ 가스 폭발, 가스레인지 폭발 등 우연히 일어난 사고
-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 ※ **붕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함
  -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음
  - ※ **침강**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말함
  - ※ **산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함

###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 :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함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 / 전철 / 기차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포함)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터카 제외)
5. 여객수송용 선박

### ○ 강도 상해사망/ 후유장해

- ▶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 1. 보험기간 중에 강도에 의한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서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 2. 보험기간 중 제1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 ▶ 제1항의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 내지 제336조를 따르며,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조 내지 제339조에 의합니다.

### ○ 의료사고 법률비용지원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의료법 제3조에 정한 의료기관[병원 또는 의원등(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의미합니다.)]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의료사고 법률비용으로 지급
- ▶ 의료사고라 함은?

-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상외의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총칭하는 것으로 의료 과오로 인한 것과 불과항력적인 것을 포괄하여 말합니다.
- 그러나, 의료법 제3조에 정한 의료기관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는 의료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등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14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합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 자동차라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

부상등급	지급금액	부상등급	지급금액
1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8급	보험가입금액의 10%
2급	보험가입금액의 50%	9급	보험가입금액의 8%
3급	보험가입금액의 40%	10급	보험가입금액의 6%
4급	보험가입금액의 30%	11급	보험가입금액의 5%
5급	보험가입금액의 30%	12급	보험가입금액의 4%
6급	보험가입금액의 20%	13급	보험가입금액의 2%
7급	보험가입금액의 15%	14급	보험가입금액의 1%

○ **상해 진단위로금 (교통상해 제외)**

-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최초진단(4주이상)을 받은 경우에 보험가입금액을 1회에 한하여 지급(사고당1회)
- ※ 추가진단은 제외

**■ 교통상해 사고 : 보장 제외**

- ①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

(적재물 포함)과의 충돌·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접촉·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 ②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 ③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 **교통수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기차, 전동차, 기동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포함), 리프트, 모노레일
-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음)

○ **폭발·화재·붕괴 사고 재난지원비용**

-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등의 사고로 성남시 내 위치한 주택에 피해가 발생하고 **소방서 추산(소방서 추산손해가 없을 시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의 추산 손해액) 피해기준 100만원 이상시** 성남시가 세대주에게 제공하는 재난지원비용 담보

▶ 보상하는 사고란?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및 전기적 스파크 포함)사고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사고
  - 폭발 :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
  - 붕괴 :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 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 결함 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음
  - 침강 :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 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 결함 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 앉는 것을 말함
  - 사태 :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 **세대당 보상한도 : 1,000,000원 / 총보상한도 : 300,000,000원**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피해 재난지원비용 : 보장 제외**

1. 계약자, 피보험자, 주민의 고의로 인한 직접 또는 간접 손해
2.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3.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4.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로 생긴 손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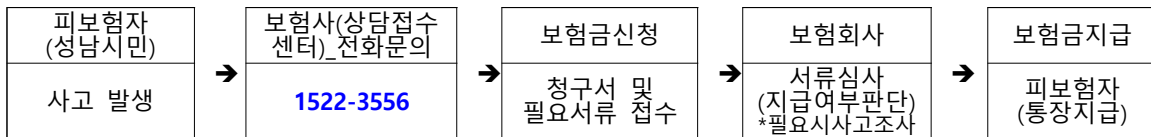
5.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자연소모 또는 고유의 성질에 의한 마모, 녹, 곰팡이, 부식, 변질, 변색 침식 기타 이와 비슷한 사유나 쥐나 벌레가 쓸거나 먹어서(서식 또는 충식) 생긴 손해
6.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사고로 인하지 않은 누수에 따른 손해
7.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8. 주택의 복구를 위해 소송이 필요한 경우 그 소송으로 인한 비용손해
9.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
10. 위 제9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11.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건물 또는 구조물의 건축, 수리, 철거 등 관계 법령의 집행으로 발생한 손해
12. 소방서 추산 각 가구당 **1백만원 미만의 손해**가 발생한 사고 (소방서 추산손해가 없을 시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의 추산 손해액)
13. 보험개시일 이전에 이미 발생하여 회사에 보고되지 않은 손해
14.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의 사고 중 소방서가 조치하지 않고 진압된 사고에 대한 손해
15. 신축물의 통상적인 침하로 인한 손해
16. 인공적으로 조성된 대지의 침하나 지각변동으로 인한 손해
17. 설계결함, 시공결함, 결함재료의 사용으로 인한 손해
18. 동일한 시설 내에서의 건축물의 해체, 건축, 구조변경, 수리 또는 기초공사나 굴착공사로 인한 손해

◆ 보험금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상담 및 접수처)에 문의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2. 기타필요서류 : 시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에 문의바랍니다.

※ 보험금청구 및 지급절차



문의 : 시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



1522-3556

FAX. 0507-774-0662

◆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공통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위임장 작성시 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이 필요합니다)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④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
사망	① 공통서류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 자연재난,사회재난사망시 : 공공기관 사고조사자료 ④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 말소자 등.초본,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위임장(필요시))
후유장해	① 공통서류 ② 후유장해 진단서(손해보험 보상청구용. 장해율 %) (뇌·신경계 : ADLs) ③ 사고사실확인서류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_요청 시) * 자연재난 후유장해시 : 공공기관 사고조사자료 (기타: 기상통보 확인서류)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① 공통서류 ② 초진진료기록지(언제/어디서 상해가 발생됐는지 내용 기재 必) ③ 진단서 또는 진단확인서류(진단주수 기재 必)
화재,폭발,붕괴, 재난지원비용	① 공통서류 ② 사고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화재증명원등 ③ 소방서 추산 손해액 ④ 영수증 등 비용 발생 확인서류 ⑤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요청자료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① 공통서류 ② 사건신고확인원(관할 경찰서장 발행) ③ 의사진단서 ④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_ 공소장 (약식기소시 : 약식명령문)
의료사고 법률비용지원	① 공통서류 ② 사고증명서 (법원의 소장접수 증명원, 변호사 착수비용 세금계산서, 병원 또는 의원의 진료확인서등)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① 공통서류 ②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사고확인서) ③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 청구서류접수후 보상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수 있습니다.